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택 만들기

한수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건축물 범죄예방 제도의 도입과 발전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는 건축·도시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발생 및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으로, 2010년 이후 국내 정책에 활발히 적용되었다. 이와 함께 CPTED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이루어졌다. 2014년 5월 「건축법」 제53조의 2가 신설되어 우리나라에 건축물 범죄예방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로써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CPTED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다중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된다. 하지만 당초 주거용 건축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범죄에 더욱 취약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3

「건축법 시행령」개정 전 · 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

개정 전(시행 2014.11.29.)	개정 후(시행 2019.7.1.)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 9. (생략)	2. ~ 9. (기준과 동일)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3, 대통령령 제25786호(2014. 11. 28.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457호(2018. 12. 31. 일부개정)의 내용 참고

이후 소규모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자 2018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발맞춰 기존의 범죄예방 건축기준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이 아닌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가 유흥점객업소, 상점, 사무실에 비해 주택에서 훨씬 더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확대 적용은 의미가 크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은 적용대상 확대(제3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강화(제10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기준 마련(제11조), 침입방어 성능기준 증명방법 제시(별표1)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제10조와 제11조의 내용은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강화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10조에서는 아파트의 적용대상이 모든 아파트로 확대됨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지의 출입구, 담장,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경비실, 주차장, 조경, 건축물의 출입구, 세대 현관문 및 창문, 승강기·복도 및 계단실, 건축물의 외벽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적용되었던 내용과 거의 유

* 2017년 기준으로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범죄의 12.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유흥점객업소(6.6%) 상점(4.6%) 사무실(2.5%)에서 발생하는 범죄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검찰청 2018, p.398).

사하지만, 건축물 측면이나 뒷면 등에 대한 조명 설치, 겸침용 기기 설치, 창문의 방범시설 설치 기준이 추가되었다. 즉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하고(제10조 제11항) 전기·가스·수도 등 겸침용 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제10조 제12항) 의무화하였으며, 세대 창문에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용이한 개폐 가능 구조로 설치하도록(제10조 제13항) 권장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세대 창문의 방범시설 설치 기준을 제외한 모든 조항이 의무 사항으로서, 이전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보다 한층 더 강화되었다.

다음으로 제11조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에 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조문에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해당 주택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의무 사항과 권장 사항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도 주택과 동일하게 마련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그중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41페이지의 표와 같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구분	내용	비고
대지출입구	영역성 확보, 자연적 감시 고려, 연속적인 조명 설치	의무
담장	사각지대 고려 및 투시형 설치 권장, 조경수 일정 간격 식재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자연적 감시, 놀이터 주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경비실	조망 가능 구조 고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 권장	”
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 설치	”
조경	주거 침입 이용 방지	”
건축물 출입구	접근통제시설 설치, 자연적 감시 고려 또는 반사경 등 대체시설 설치, 조명 설치	”
세대 현관문 및 창문	창문·출입문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 사용	”
승강기, 복도, 계단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외벽	배관 등을 이용한 침입 방지	”
건축물 측면, 뒷면 등	조명 설치 및 반사경 등 대체시설 설치	의무(신설)
겸침용 기기	전기·가스·수도 등 겸침용 기기는 세대 외부 설치(원격검침 가능 시 제외)	의무(신설)
방범시설	창문에 방범시설 설치 시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시설 설치	권장(신설)

출처: 국토교통부(2019, 7월 29일 보도자료, p.2)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세대 창문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 사용	의무**
세대 현관문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 사용	권장
건축물 출입구	자연적 감시 고려 또는 반사경 등 대체시설 설치	권장
외벽	배관 등을 이용한 침입 방지	의무**
건축물 측면, 뒷면 등	조명 설치 및 반사경 등 대체시설 설치	의무 **
검침용 기기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세대 외부 설치(원격검침 가능 시 제외)	권장
담장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	의무(신설)
주차구역	사각지대 고려,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 설치	의무(신설)
출입구, 지하층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권장(신설)
계단실	창호 설치	권장(신설)
방범시설	창문에 방범시설 설치 시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시설 설치	권장(신설)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적용 권장, ** 당초 권장기준을 의무기준으로 강화

출처: 국토교통부(2019, 7월 29일 보도자료, p.3)

즉 세대 창호재는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건축물 외벽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배관 등을 타고 오르내릴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등에는 적정한 조명이나 반사경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담장과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에는 「주차장범 시행규칙」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및 조명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제10조~제14조)」뿐만 아니라 모든 적용대상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범죄예방 공통기준(제4조~제9조)」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시 적용대상 건축물들은 「공통기준」과 「건축물 용도별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하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적용대상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신규 적용대상인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대규모 아파트와는 달리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요소별 의무·권장 사항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외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담장 계획 ◆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시 영역성 확보를 위해 대지경계부 바닥에 단을 두거나 재료·색채를 달리하거나 안내판·보도 등을 설치 	제11조의 7 제5조 제2항 (공통기준)
이격공간	◆ 건축물의 축면이나 뒷면, 정원, 사각지대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	제11조의 5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에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 ◆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 	제11조의 5 제11조의 8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목 식재 ◆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태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 식재 	제7조 제1항 (공통기준) 제7조 제2항 (공통기준)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적 감시를 위해 기가적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공용 출입구 계획 ◆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공용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사경이나 거울 등의 대체시설 설치 ◆ 공용 출입구에 접근통제시설 설치 ◆ 공용 출입구에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 ◆ 공용 출입구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11조의 3 제11조의 3 제4조 제2항 (공통기준) 제11조의 5 제11조의 9
세대 창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창호재는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 사용 ◆ 세대 창문에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용이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제11조의 1 제11조의 11
세대 출입문	◆ 세대 출입문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 사용	제11조의 2
계단실 또는 승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실은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 설치 ◆ 1층 승강장, 승강기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11조의 10 제11조의 9
건물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물의 외벽 계획 ◆ 외벽에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 등을 태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 	제11조의 4 제11조의 4
지하실 또는 옥상	◆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옥상 출입구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11조의 9
부속 시설	◆ 겸침용 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거나 원격 겸침기를 사용하는 등 외부에서 사용량을 겸침할 수 있도록 설치	제11조의 6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시행 2019. 7. 31.)의 의무 사항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시행 2019. 7. 31.)의 권장 사항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시행 2019. 7. 31.)의 [별표 1] 기준에 적합
출처: 조영진 외(2019, p.31) 내용을 일부 수정함.

모 주거용 건축물은 개인이 건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고시에서 제시한 의무 사항과 권장 사항을 건축 요소별로 정리해 보면 위의 표와 같다.

한편 기준에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예시나 사례들이 많지 않고 사람들의 범죄예방시설에 대한 이해가 낮아 실제 고시 내용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적용은 설계자나 건축주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으나, 이해를 돋고자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돋고자 2019년 9월 경찰청과 공동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를 발간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건축 요소별로 정리하고 적용 예시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따라서 더 많은 적용 예시를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행본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지경계부(투시형 담장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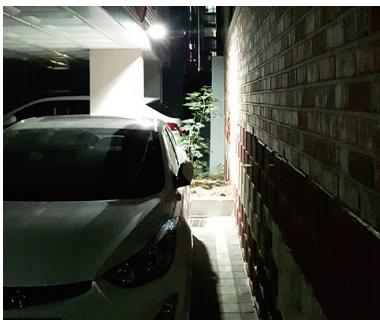
대지경계부(바닥 재료 차별화)



주차장(자연 채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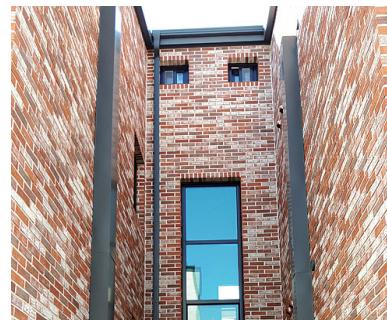
조경(낮은 수목 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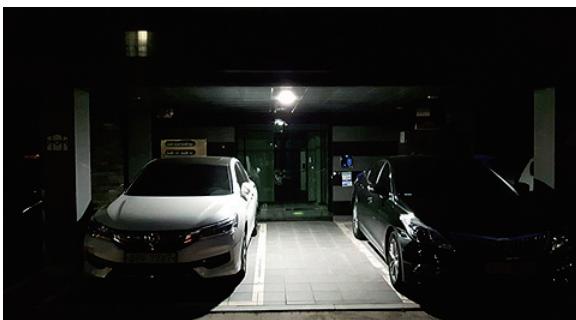
이격공간 및 주차장(적정한 조명)



계단실(창호 설치)



건축물 외벽(배관 방법덮개)



공용 출입구(통행로에서 자연적 감시, 적정한 조명)



검침용 기기(세대 외부에 설치)

그렇다면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범죄예방시설은 보안등(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 적정한 조명 설치), 크레센트(세대 창호의 방범 성능 강화), 배관 방범덮개(수직배관이나 냉난방 설비를 이용한 침입 방어), 출입문 접근통제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이다.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들을 개별 주택에 적용할 경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동에 8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경우 고시 내용에 따라 전주형·벽부형 보안등, 크레센트, 배관방범덮개를 설치할 때 약 341만 원(세대당 약 43만 원)이 든다. 여기에 추가로 출입문 접근통제시설과 부착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약 397만 원(세대당 약 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1동에 6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고시 내용에 따라 벽부형 보안등, 크레센트, 배관 방범덮개를 설치할 경우 약 150만 원(세대당 약 25만 원), 여기에 출입문 접근통제시설과 부착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할 경우 약 206만 원(세대당 약 34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세대당 5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범죄예방시설 종류 및 설치 비용

고시 조문	시설	설치 위치	1식당 평균 비용	1동당 설치 개수	
				연립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제11조의 5	전주형 보안등	주차장	940,904원	1동당 2식	-
	벽부형 보안등	건축물 출입구, 측면이나 뒷면, 정원, 사각지대, 주차장	162,724원	1동당 4식	1동당 5식
제11조의 1	크레센트	세대 창호	92,718원	1동당 8식 *	1동당 6식 ** (1세대당 1식)
제11조의 4	배관 방범덮개	수직배관, 냉·난방시설	132,714원	1동당 1식	1동당 1식
제4조 제2항	출입문 접근통제시설	건축물 출입구	318,150원	1동당 1식	1동당 1식
제11조의 5	부착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주차장	243,158원	1동당 1식	1동당 1식
1동당 설치 비용 (세대당 평균 설치 비용)		보안등+크레센트+배관 방범덮개	3,407,162원 (425,895원)	1,502,642원 (250,440원)	
		보안등+크레센트+배관 방범덮개+출입문 접근통제시설+부착형 영상정보처리기기	3,968,470원 (496,059원)	2,063,950원 (343,992원)	

* 1동당 8세대(4층 규모, 층별 2세대 구성) 거주 가정, ** 1동당 6세대(3층 규모, 층별 2세대 구성) 거주 가정
자료: 조영진·현태환(2019, pp.4-8)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현행 범죄 예방 건축기준은 신축 주택에만 의무 적용되지만, 신축 주택에 비해 범죄에 노출되기 더욱 쉬운 기존 주택에도 범죄 예방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방범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침입 범죄는 주로 문과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침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범죄 예방 시설들을 설치한다면,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다 안전한 주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범죄예방 행동 실천하기*

아무리 범죄 예방 성능이 우수한 물리적 여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범죄가 저절로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성능 제고와 함께 거주자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범죄 예방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범죄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인 행동 요령 열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문단속의 생활화이다. 짧게 외출하는 경우에도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을 잠그는 습관이 중요하다. 경찰청의 2017년 범죄통계에서 침입 절도 및 침입 강도의 약 40% 가 문단속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고층에 거주한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다. 베란다 난간이나 배관을 타고 올라오거나 옥상에서 내려와 창문으로 침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명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대 출입문에 우유투입구 등의 개구부가 있는 경우 방범 커버로 막도록 한다. 최근에 지어지는 신규 주택에서는 우유투입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종종 우유투입구가 설치된 현관문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특히 유념해야 한다. 셋째, 집 열쇠는 항상 소지하고 집 주변의 우편함이나 화분 밑, 우유주머니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공용 출입구와 세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최근 세대 출입문을 비출 수 있도록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사례가 있으니, 주변에 몰래카메라가 없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 조영진, 한수경, 혼태환, 박유나, 유혜정, 경찰청 범죄 예방 정책과(2019, pp.44-45)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경찰청(2018, pp.388-389)

집 안의 조명이나 TV를 켠 상태로 외출하면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 공용 출입구 및 세대 출입문을 열기 전에는 출입문 안전고리나 비디오폰을 통해 반드시 방문자를 확인한다. 일곱째, 고가의 귀중품이나 현금은 금고·은행 등의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여덟째, 주차장 이용 시 주위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차에 내려서는 후미진 곳이나 사각지대를 피해 밝은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좋다. 아홉째, 주택 주변이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관리하고 야간에 어둡지 않도록 조명을 적절히 교체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집 주변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 또는 차량을 목격하거나 비명,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즉시 112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한 주거용 건축물에서 상기의 범죄예방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2014년 우리나라에 건축물 범죄예방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이 단독 용도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주택에서의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통한 물리적 안전 개선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아직까지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의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단독주택(다가구 제외)과 기숙사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건축물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존 주택에 대한 범죄예방 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열악한 환경의 기존 주택은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으나, 거주자나 소유주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범죄예방시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범죄예방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편으로서 집수리 지원 등 기준 정책과 연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택의 물리적 안전 개선과 함께 범죄예방 행동의 실천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의 범죄예방 필요와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앞으로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화재안전·생활안전 등과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방범창 때문에 구조가 늦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창호나 문, 각종 범죄예방시설의 침입 방어 성능 증명에 대한 제도 마련과 방범산업의 발전이 향후 과제로서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경찰청. (2018). 2017 범죄통계.
- 2 국토교통부. (2019).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하겠습니다. 7월 29일 보도자료.
- 3 대검찰청. (2018). 2018 범죄분석.
- 4 조영진, 한수경, 현태환, 박유나, 유혜정,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019).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 건축도시공간연구소·경찰청.
- 5 조영진, 현태환. (2019).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확대 적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 auri brief 194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6 「건축법」법률 제12701호(2014. 5. 28. 일부개정)
- 7 「건축법」법률 제16485호(2019. 8. 20. 일부개정)
- 8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86호(2014. 11. 28. 일부개정)
- 9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57호(2018. 12. 31. 일부개정)
- 10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8호(2015. 4. 1. 제정)
- 1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2019. 7. 24. 일부개정)